#### [서식 예]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(교환, 대지)



#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

채권자 〇〇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◇◇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등기부상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ㅇ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피보전권리의 요지 20○○. ○. ○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○○○원(개별공시지가/m²×면적×30/100)

### 신 청 취 지

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, 증여, 저당권설정 그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 신 청 이 유

#### 1. 피보전권리

가. 교환계약의 체결

채권자는 20○○. ○. ○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권자 소유의 ○○시 ○○구 ○○ 동 ○○ 대 1,100㎡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, 같은 해 7월경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받기로 하고 우선 채무자에게 채권자

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 
③ 
○○. 접수 제○○○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.



나.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

위와 같이 교환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이행을 미루고 있으므로,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.

#### 2. 보전의 필요성

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,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선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3. 한편, 채권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명령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 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

교환계약서

1. 소갑 제2호증

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

각 1통

1. 토지대장등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채권자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#### ㅇㅇ지방법원 귀중



# 부동산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○○○m². 끝.

	HAIA 크린비A FIL					
제출법원	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을 관할하는 지방법원	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)					
불복절차 및 기간	<ul> <li>(채권자)</li> <li>・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1조 제2항)</li> <li>・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(민사소송법 제444조)</li> <li>(채무자)</li> <li>・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3조), 본안의 제소명령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7조) 등</li> <li>・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 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・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.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 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</li> </ul>					
비 용	• 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•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•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: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,000분의 2(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), 지방교육세는 등록면 허세액의 100분의 20(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)					
기 타	·토지의 목적물가격 : 개별공시지가/m²×면적×30/100(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 제2항)					

#### ※ 집행절차

				보증보험사와 지급 보증위탁계약체결	
가처분신청	→ 2~3일후	담보제공명령서 수령(공탁명령)	<i>─</i> → 5일내	<ul> <li>※ 지참서류등</li> <li>1. 가처분신청서사본</li> <li>2. 주민등록표등본</li> <li>3. 담보제공명령서</li> <li>4. 인감증명 및 도장</li> <li>※ 온라인계약체결가능</li> </ul>	<b></b>

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(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